

초지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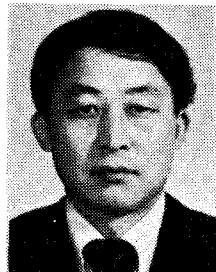
草地造成

및 관리절차와

管理節次

방법

方法



초지조성계장 구 능 완

〈농수산부 낙농초지과〉

- 차례 -

〈머리말〉

1.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마음자세
2. 초지조성 적지 선정
3. 초지조성 허가신청
4. 초지조성 허가절차
5. 초지조성 작업실시
6. 초지조성 원료 및 지적정리
7. '84초지조성사업 추진요령 요점
8. 초지의 관리

〈맺는 말〉

〈머리말〉

인구의 증가와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축산물의 수요가 급증하여 1972년도에 1인당 연간 고기 소비량이 5.6kg이던 것이 1983년에는 13.2kg으로 늘어났으며 우유 소비량은 1972년에 2.5kg이던 것이 1983년에는 18.5kg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계란 소비도 1972년도에 1인당 86개 소비에서 1983년도에는 120개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축산물의 소비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료곡물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사료곡물의 수입량도 크게 증가하여 1972에 43만 M/T 2천 6백만\$)을 수입하면 것이 1983년에는 371만 M/T (546백만\$)이 수입되었다. 이와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1986년에는 406M/T, 1991년에는 약 544만 M/T의 사료곡물이 수입되어야 하며 소요외화는 '86년에 6억 \$과 91년에 9 \$의 외화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와같이 막대한 사료곡물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음에도 쇠고기는 아직도 국내생산으로는 자급하지 못하고 외국에서 상당량을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늘어나는 사료곡물의 수입량 절감은 물론 안정된 소 증식 기반구축과 조사료 위주의 소 사육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정부는 산지초지개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65천ha에 불과한 초지를 매년 확대개발하여 1991년까지는 251천ha로 조성하여 현재 200여만 두의 소를 350여만 두로 증식시키기 위하여 초지조성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다. 따라서 초지조성을 함께 있어서 농민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1.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마음자세

근자에 초지조성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는 많은 사람들을 접해오면서 느낀 점은 초지를 조성해서 내 손으로 직접 경영을 하고 생활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것보다는 기업적으로 투자를 하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분들을 상당히 보아 왔다. 자그마치 몇 10ha에서 몇 백 몇 천ha까지를 구상하고 그림속의 목장이나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초지조성을 시도하는 분들도 보았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거창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그러한 계획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축산업이란 사업자체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본인이 직접 경영하고 일생의 사업으로 장구한 세월을 몸담아 많은 경험과 기술을 쌓아야 성공할 수 있었고 남보기에는 그림같은 목장도 경영할 수 있는 것이다. (직접 경영하는 사람이야 그림같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이러한 분들에게 빼놓지 않고 권하여 온 것은 “축산은 그림같을 수가 없다고!”

즉, 일요일도 공휴일도 명절도 없이 새벽부터 땀 늦게까지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축산의 생리이고, 파리와 모기 그리고 악취속에서 고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축산업이며, 축산 소득의 증가는 남의 손이 아닌 나와 내 가족들의 정성스런 보살핌과 손때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축산의 소득이 아무리 좋아도 1차산업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고 기업의 이윤이나 은행의 금리와 비교될 수 있다면 우리나라의 산지가 온통 목장으로 변한지 이미 오래 전이었을 것이다.

결국 축산업을 통해서 남보다 더 일하고 남보

다 짐을 자지못한 맷가로 남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외는 더 희망적인 확신을 드릴 수가 없다.

따라서 초지조성 적지선정방법, 초지조성방법 지원제도를 알아보기 이전에 단 며칠이라도 축산을 경영하고 있는 농가에 가서 농부와 같이 실제 농장 생활을 한 후에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볼 것을 권유한다. 농자는 천하지 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지 않았는가?

농자(農者)는 천자(天者)요, 천자는 천심(天心)을 갖는 것이다. 천심을 갖지 않고는 감히 축산을 즉 초지조성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나와 내가족의 의견이 통일되어 목장 생활이 적성에 맞아 가축을 사랑으로 기를수 있고 4~5년간의 장기투자와 이에따른 인내가 필요하며 첫출에 배부를 수 없는 특성을 이해하고 처음 소규모로부터 경험과 기술을 익혀 점차적인 확대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근년에 축산 소득이 향상되어 초지조성에는 소홀히하고 수입소의 지원 입식에만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에서 말한 축산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 마음의 자세를 바로 고쳐야 할 것이다.

수입소가 비록 국내생산 소보다 다소 값이 싸면 때가 있었지만 이로서 발생되는 사행심을 배제하고 견진한 사고 방식과 소중식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국내가격과 비슷한 가격이 되도록 시책을 보완하고 있으며 도입소를 부당한 방법으로 처분하였을 때는 여타의 축산지원을 일체 해줄 수 없도록 하고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고 외국으로부터 소를 수입해올 수 없는 실정이고보면, 외국의 소가격 상승추세, 국내외화 절약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소도입을 중단해야 할 처지임은 누구나 수긍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초지조성 후 소입식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의무사항이 아님을 명심하고 초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입식 및 시설, 경영까지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운 후에 사업에 착수하기를

바란다.

2. 초지조성 적지 선정

초지조성 적지를 엄밀히 말한다면 풀이 자랄 수 있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초지조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초지조성의 목적은 가축이 먹을 수 있는 풀을 재배해서 양축을 하고, 양축의 목적은 소득을 올리는데 있으며 같은 자본과 노동력을 들여 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좋은 적지를 찾게 되는데 초지의 적지로서는 대체적으로 교통, 생활여건, 토질, 방향, 경사도 및 수원(水源) 등의 기본여건은 물론 개발에 따른 여러가지 제반법규의 저촉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간혹 처음으로 초지조성을 하고자하는 사람들 중 외형적인 여건만을 판단하여 땅을 구입한후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했으나 법적인 개발제한 사항에 저촉되어 허가를 받지 못하고 애태우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외형적인 여건을 갖춘 땅이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구입에 앞서 당해 토지에 대한 개발 가능성 여부를 토지가 소재해 있는 시군의 축산계를 통하여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농지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보존법 등과 관련하여 저촉 여부를 알아본 후에 구입이나 개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개발예정지에 아카시아나무, 오리나무, 리키다소나무 등이 있으면 과거에 사방사업을 실시했던 곳일 가능성성이 많으며 이러한 곳은 사방시설지 해제에 어려움이 있고 저수지나 넓은 농경지 상단에 위치한 산은 수원함양보안림 및 토사방비 보안림 등으로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조림사업이 되었던 곳도 역시 조림비의 반납이나 개발이 제한되고 있으며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전지역으로 되어있는 임지가 산림법상으로는 보전임지와 준보전지로 분류되는데 보전임지중 10ha미만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개발이 용이하나 10ha이상의 준보전임지나 보전임지내를 개발할 때는 건설부 장관과 산림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상수도원(시골의 간이상수도원 포함) 또는 하천오염이나 인근

환경에 위해가 예상될 때에도 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니 비록 자기 소유산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사전에 토지가 소재해 있는 시군에서 확인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초지의 적지선정시에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을 간략하게 기술하면,

○교통여건은 현지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거나 도로의 개설이 가능할 것인지?

차량통행이 되지않아 차후 농도를 개설할 수 있다 해도 다른사람의 농경지를 통과해야 하거나 농로 개설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면 좋은 조건이 되지 못하며 젖소를 사육코자 할 때는 집유장과의 거리나 운반시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생활여건은 아동들의 취학여건이나 인근부락으로부터의 인력조달 가능성 및 전기인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물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가축사육이 불가능할 것이니 쉽게 산골짜기에서 흘려 내려오는 자연수나 인근 냇물의 이용이나 지하수개발로 수원확보가 용이한 지역이어야 할 것이다.

○개발예정지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남향보다는 북향에 가까울수록 한해나 하고 현상이 적어 유리하다.

○경사도, 토질 등은 경사가 낮을수록 작업에 편리하고 배수가 잘되는 비옥한 토질로서 자갈이 많지 않고 질땅이 아닌곳이 좋으며 임목은 현재의 허가 조건상 적은 곳이거나 활집목 등 비경제림지가 허가조건에는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적지등급기준을 들면 다음과 같다.

구분	경사도	유호토심(有效土深)	자갈함량	토성(土性)
1급	20° 이하	100cm 이상	5% 이하	사양토, 양토
2급	21~30	100~50cm	6~20	석양토, 식토
3급	31~35	49~30cm	21~30	사토, 중점토
4급	36° 이상	29cm 이하	31% 이상	입사질토

※ 각 항목별로 3급지 이상을 책정하고 있음.

3. 초지조성 허가신청

초지조성 적지로 판단되는 토지가 확정되었으면 초지조성 허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허가신

청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초지조성 허가신청서** : 신청시에는 각 시군 민원실이나 축산업 협동조합에 비치되어 있는〈별지 제 1 호서식〉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서 작성시에는 지형에 맞는 조성방법(경운조성, 불경운조성, 임간 초지조성)을 기재하고 연차별 조성방법등을 기재한다. 가능하면 일시에 계획된 전면적을 개발하면 간편한 점도 있겠으나 초지조성 기술과 경험을 쌓고 투자의 분할 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조금씩 경영규모에 맞게 개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초지조성과 관련하여 초지로 조성코자하는 면적외에 목장경영에 필요한 축사나 부대시설 용지 기타 시설부지나 진입도로를 내는데 필요한 면적을 함께 기재하여 신청하면 임야훼손허가 등 별도의 허가 없이도 시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다만 축사를 포함한 건축허가는 별도허가 필요함) 사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면적을 확보해 두는것이 좋겠다.

○ **구비서류** : 임야(토지) 대장등본, 임야(지적)도, 2만5천분의 1 지형도, 토지 사용승락서 (타인소유임야를 임대개발할 경우), 사업계획서 등이 첨부돼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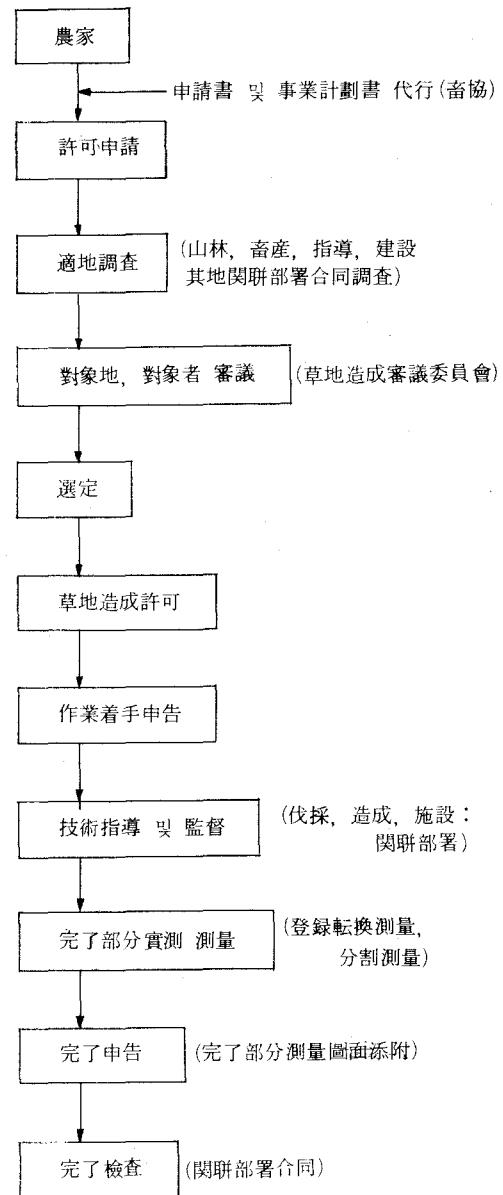
○ **사업계획서(별첨양식)** : 연차별 조성면적, 가축입식두수, 시설, 장비 및 생산계획과 투자계획이 명시되어야 하는데 이는 초지조성허가가 적지판정만으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고 초지조성 사업을 허가 하는 것으로서 허가 이후 조성작업에서부터 관리 운영까지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는 전제로서 적당한 토지와 성실한 사업자와 필요한 자금과 기술이 준비되어 합당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사업계획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최소한의 필수적인 면적의 조성이나 과다한 투자를 방지하고 축산이외의 타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초지조성허가에 앞서 허가청의 초지조성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도 여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다.

○ 신청자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하여 각 지

〈참고 1〉

○ 草地造成節次



○資金整算

- 草地造成農家番号 賦與
- 草地造成者 카드 作成 (市·郡備置)
- 草地管理台帳作成 (市郡 指導所道 農水產部 備置)
- 草地造成完了確認書 發給

역축협에서는 초지조성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양식을 항시 비치해 놓고 초지조성 허가서류

일체를 작성해서 허가기관에 접수시켜주고 초지 조성에 따른 자재공급 등 조성자들의 협의를 도모해 주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란다.

○초지조성 허가신청서: 시군의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시군의 축산계(축정계)에서 주관하여 처리하게 되니 초지조성에 관한 모든 상세한 사항은 축산계와 협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4. 초지조성 허가절차

초지조성은 별표(참고 1)의 초지조성 절차와 같이 신청서에서부터 허가완료 검사까지 진행되는데 조성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면 50일 이내에 처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별지제 4 서식〉의 초지적지조사서 양식에 의거 초지와 관련된 부서 즉 축산, 산림, 농촌지도부서와 경우에 따라서는 이밖에도 관련부서로서 선설, 농지, 위생분야의 관계직원이 합동으로 현지에 출장하여 초지조성과 목장경영상 필요한 교통, 수원 등 기본여건, 목조재배 및 이용에 관계되는 표고, 경사도, 토심, 토성, 비옥도, 자갈함량, 식생 상태 및 임황, 법적 개발제한사항과 관련된 사항, 초지조성 및 목장경영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 등 조사될 사항을 종합하고 각분야 별로 조사자 의견을 기록하여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지조성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허가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제 3 호 서식〉에 의한 초지조성 허가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허가증에도 역시 초지면적, 진입로, 부대시설용지, 기타 필요한 면적과 연차별 조성계획 면적 및 조성방법을 명시하게 된다.

5. 초지조성 작업착수

초지조성 허가를 받으면(초지법 제 5 조) 초지 조성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허가증에는 초지의 성공적 개발과 성실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허가하게 되는데

- ①사업착수시는 동 착수신고서를 허가청에 제출해야 하고
- ②사업 완료시에는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신고서를 허가청에 제출해야 하며
- ③그외 사업의 성공적 조성과 성실한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후 1년 이상 작업을 중단한 때 또는 부실개발로 인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초지조성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허가를 취소하고 대리인을 정하여 대리조성토록 하고 대리조성자로 하여금 관리운영케 할 수 있도록 규정(초지법 제12조)되어 있으니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작업착수 전에 작업개시일을 신고하므로서 허가구역의 경계표시를 해주어 허가구역 외 침범방지, 벌채면적 및 재적(材積) 확정, 벌채된 임목의 처리, 구역별 작업방법지도와 농가에 꼭 필요한 사항을 이행토록 할수 있다.

또한 허가시에는 초지조성대상지에 대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여 질소, 인산, 가리, 석회 등 비료의 적정 사용량을 사전에 제시하여 주고 있으며 토양여건 및 지대에 따라 적당한 초종(草種) 별 종자 파종량도 산출하여 소요자체들을 일괄 공급토록 하고 있으며,

초지조성 및 관리와 이용에 관한 교육을 각급 기관을 통하여 수시로 실시하고 현지 출장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나 농가에서는 교육이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많은 기술을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6. 초지조성 완료 및 지적정리

(地籍整理)

초지조성 작업이 완료되면 1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은 전술한바 있거니와 완료신고서가 접수되면 허가청에서는 초지조성된 토지와 관련된 부서에서 합동으로 완료검사를하게 되는데 이때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고 실측도면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완료된 부분의 실측도가 제출되면 초지조성면적이 확정되어 초지조성 완료확인서를 발부하게 된다.

완료된 부분에 대한 실측측량은 조성 농가가 시군 민원실에 신청하는데 조성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조성면적 ha당 39,500 원을 보조 또는 응자로 지원해주고 있다. (다만 자력초지 조성농가는 자담)

초지로 조성된 토지는 그 지목(地目)을 “목장용지”(牧場用地)로 지목변경을 해야 되는데(지적법제5조 및 동시행령제5조) 초지조성 완료일(완료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목변경신청을 해야하며(지적법 제20조) 지목변경신청시에는 초지조성 완료확인서와 초지로 조성된 부분에 대한 측량도면(대개분할측량도면)이 첨부되어야 한다.

대개의 측량도면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3개월이 경과되지 않도록(측량후 3개월이 경과되었더라도 그형질이 측량당시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는 당초의 측량도면 활용가능) 초지조성 완료확인서를 발급받은 즉시 지목변경 신청을 하면 지목변경을 위한 별도의 측량을 하지 않아도 지목변경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행 내무부의 「지목변경 사무처리령」상 초지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라 할지라도 초지와 이에 접속된 지역에 축사 등 부속시설이 없는 초지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초지내나 접속된 지역에 축사등 부속시설의 유무에 관계없이 (채초지의 경우) 전체 초지를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초지관리에 일관성을 기하고 효율을 기할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7. '84초지조성사업 추진요령

가. 기본방침

- 소규모와 단지초지 개발의 병행추진
- 전면적을 완벽한 개발로 우량초지화
- 대상지 및 대상자 우선으로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에게 개발허용
- 자력초지 개발은 조성비 및 가축입식비 등 자담추진
- 기술교육강화로 초지조성사업의 정착화
- 적극적인 불실초지 보완으로 초지확대개발 기반조성
- 초지관리실태 정밀조사로 개인별 카드제 관리 및 관리제도 정비

나. 지원방법

- 1~10ha 미만 : 40% 보조, 40% 응자, 20% 자담
- 10~50ha 미만 : 80% 응자, 20% 자담
- 50ha 이상 : 100% 자담

라. 조성계획 면적

- 신규조성 : 10,000ha (자력초지는 별도)
- 기성초지보완 : 5,000ha

라. 조성용지

지역여건에 따라 편리한 방법 선택실시.

[경운조성(耕耘造成), 곁뿌림조성(不耕耘造成)
임간초지조성(林間草地造成)]

마. 조성비용 (ha당 造成費)

- 조성단비 : 경운조성비 : 1,227천원

 곁뿌림조성비 : 946천원

 임간초지조성비 : 754천원

- 비용구성 : 장애물제거, 개간비, 농용석회, 비료, 종자, 시비파종, 목도, 목책설치, 측량, 주변식수 소요액 등

바. 대상지 및 대상자 선정지침

- 조성규모는 1ha 이상, 축사와의 거리 2km 이내
- 대상지 및 대상자 선정은 초지조성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82. 10. 15.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 영농후계자, 새마을청소년, 고등학교 이상 축산전공자, 현지 거주자로서 직접 경영할자, 기존목장의 확장 또는 이전하는 경우는 토지소유 시기와 관계없이 허용.

● 국공유지는 관할시군내 거주자로서 본인이 직접 입주 개발할자에 한하여 농가당 10ha 이내에 한하여 허용

- 고속도로변, 그린벨트 내의 국공유지는 제외
● 고속도로변, 그린벨트내의 개발은 각각 도당 3개소 이내에 허용

사. 기성초지(既成草地) 사후관리

- 연 2회(4월, 10월) 실태조사
- 부실초지에 대한 보완대책 추진
- 부실 관리초지에 대한 대리관리자 지정 확대

8. 초지의 관리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하고 완료확인이 되어 초지관리번호가 부여되고 초지대장에 등재가 되면 그지목(地目)이야 어떻든지 이미 초지조성지구로 고시를 받고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초지법에서 정한 초지전용허가(초지법 제23조)를 받지 않고는 초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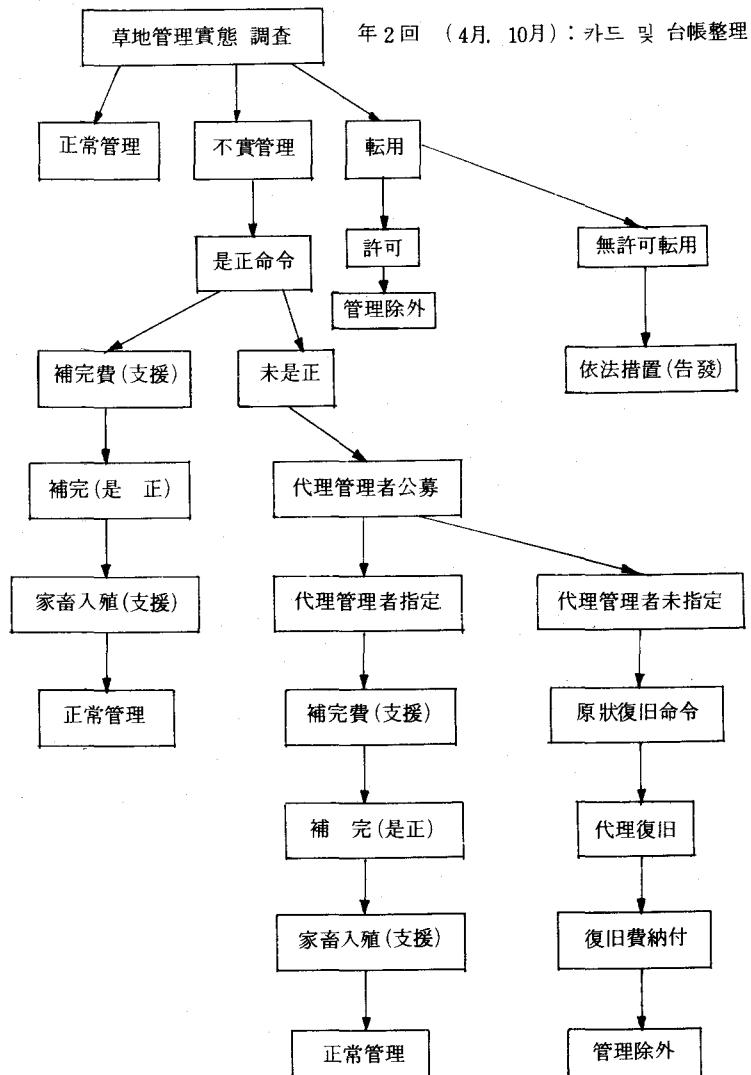
외의 사용은 일체 불허되며 이를 위배하여 타용도로 전용하였을 때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 단비의 3배에 해당되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초지는 우리나라의 식량이나 축산물의 자급을 위한 기반으로서 지속적으로 초지로 이용되어야 한다.

특히 국공유지에 초지조성을 하고자하는 사람

〈참고2〉

○草地管理節次



*資金 및 家畜入植支援은 與件이 許容되는 境遇에 限함

중 적은 자본을 들여 초지를 마련하고 축산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임대료를 내고 조성 및 이용을 하고자 한다면 바람직하겠으나 종국에 가서는 불하(拂下)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동기에서 국공유지 개발에 뜻을 둔다면 이는 잘못된 판단일 것이다.

국공유지는 국공유지로, 더우기 초지로 개발된 곳은 영구적으로 초지로 보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방향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초지법에서는 초지 조성지의 임대료를 국공유지이건 사유지이건 임대 당시의 미개발상대가격의 100분지 1로 정해 임대개발자를 보호하고 있다. (초지법 제18조)

초지 조성자는 초지를 성실히 관리 이용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지법 제21조) 매년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성실히 관리 이용치 않을 때는 시정명령을 하고 (초지법 제24조)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조성일로부터 5년 이내의 초지일 경우는 지원자금 일체를 반환조치) 조성지가 사유지라 하더라도 대리이용자를 지정하여 대리관리자로 지정을 받은자가 안심하고 이용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지법 제22조)

일반적으로 초지의 관리체계를 도표로 설명하면 <참고2>와 같다.

초지조성 지구내에서의 초지의 보존을 위하여 초지에 위해가 될 행위를 제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초지법 제8조)

초지내에서의 토석채취, 임목의 벌채, 분묘의 설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기타 초지조성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허가없이 행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초지법 제31조)

초지조성의 목적이 축산업의 경영에 있고 소득을 높이는 축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좋은 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진대 초지의 성실한 관리는 결국 축산소득을 높여주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초지는 조성지의 여건이 좋고 나쁜 것보다는 조성자의 열정에 따라 조성이 좌우되고 조성보다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므로서 생산성을 제고 시킬수 있어 초지 1ha에서 연간 목초를 35M/T 정도 생산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나 관리를 잘하는 농가에서는 50M/T~80M/T까지 생산하는 농가가 있으므로 초지관리의 여하에 따라 생산성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맺는말>

훌륭한 농부는 곡식을 가꾸기에 앞서 땅을 가꾼다고 했듯이 초지조성 사업이 한두 해에 황금을 가져다 줄 수도 없으며, 흙을 가꾼 노력의 맷가로 가축을 통하여 소득을 얻는 것이고 보면農軍이 주인이 되어 흙의 진리대로 순리를 따라 피와땀이 거름이 되어 성실히 가꾼다면 그 결과는 헛되지 않을 것인즉 투기심이나 요행심은 멀쳐 버리고 언덕마다 풀밭을 가꾸고 풀밭마다 소폐와 天心의 道人이 어울려 지상낙원을 이루는 꿈을 천천히 그리고 튼튼히 다져 나가기를 간곡히 기원하며 땀흘려 국토를 가꾸어가는 초원의 동지들에게 굳은 의지와 개척의 정신이 식지 않기를 기원한다.

◎ 國有林內 林間共同放牧 延長 ◎

山林廳에 의하면 國有林內에서 放牧할 경우 從前에는 林木生育을 保護하기 위하여 그 許容期間을 2個年으로 規制한 바 있으나 이번에 전기목책등의 시설물 철거와 사육우의 조사로 확

보를 위하여 허용기간 2個年을 완화하여 “국유림 관리 수입기관에서 현지 실정을 감안 조정 운영”도록 조치하였다고 한다.